

미디어홍보센터 운영규정

공포 2026-3호(개정 2026. 7. 24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 미디어홍보센터(이하 '센터' 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학과와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운영) 센터는 교내 대학홍보 부문을 총괄하는 기능을 확립하고 홍보 추진전략을 수립하며, 대학의 이미지 홍보 및 입학 홍보 등 학교 홍보활동과 마케팅에 관련된 홍보를 계획, 운영, 평가 및 환류한다.

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의 홍보 추진 전략 수립 및 계획
2. 언론홍보, 미디어홍보 등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
3. 온·오프라인 입학 홍보활동 운영
4. 학과 입학 홍보활동 지원
5. 홍보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
6. 기타 대학 홍보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5조(조직) ① 센터는 입학처 산하에 둔다.

② 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,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 센터는 필요 시 전문인력(전문위원, 직원, 조교)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의 기본 방침과,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입학·홍보 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에 대한 제반사항은 입학·홍보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전문위원) ① 전문위원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,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.

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으로 기간으로 한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보칙

제9조(운영내규) ①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② 내규로 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